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46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13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, 박춘선 의원 대표 발의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6월 13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박춘선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수상활동의 촉진 및 다양화 등을 위하여 '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'이 발표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기에 수상 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따라서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상위법 개정에 맞춰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상위법 근거 조항을 수정함(안 제4조제1항, 안 제6조제1항).
- 2)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- 3)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확대 등에 따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운영자 안전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.

나. 세부 검토 의견

- 안 제8조제2항은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수상레저시설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바,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¹⁾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당 시설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- 안 제9조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수상레저활동 시 사고 발생은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한강 특성상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비 착용, 무면허조종 금지 등 상위법인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3장 안전준수의무 규정을 따라야 하며, 관련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음.

다만, 현행 조례에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실질적인 책무가

1)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(위탁운영 등)

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.

있는 시설 운영자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바, 운영자의 주의의무, 안전점검,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그 밖에 안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경우,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29조의2”를 “법 제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3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”를 “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단체”를 “법인 또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인 또는 단체 등”을 “단체 또는 개인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)”을 “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편의시설을 조성”을 “편의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조성 및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운영 시 의무 등) 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)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<u>법 제29조의2</u>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 <u>법 제4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)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<u>법 제29조</u>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다.</p>	<p>제6조(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24조-----.</p>
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사업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)

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-----
--- 법인 또는 단체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단체 또는 개인 등 -----

-----.

제8조(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

및 운영) ① -----

----- 편의시설(이하 “시설”
이라 한다)을 조성 및 운영-----
-----.

② 시장은 설치한 시설의 관리
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
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
위탁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
있다.

제9조(운영 시 의무 등) ① 제8조

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
용허가 대상자(이하 “운영자”라
한다)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

제9조 · 제10조 (생략)

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